

#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,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·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(2027년 12월 31일까지)
  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조)
  -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  -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  -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  -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  -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(안 제9조의2)
-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 및 제1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현행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, 출산·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·문화유산 등·지역특산물 생산단지·농공단지 대체입주자·시장현대화 사업·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을 일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, 신설된 ‘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’ 조항은 실질적 금전적 혜택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, 이는 인구 유지 및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 특히,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감면 방식은 출산 순위에 따른 합리적 우대 기준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생자녀 양육자가 감면을 원활히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의 명확화, 온라인 및 오프라인 안내 강화,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, 기존 감면 대상자 또한 안내 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